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알림

1. 평소 농업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1.11.19.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신설
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의 원활한 현장안착을 위해 설명자료 및 홍보 리플릿을 함께 첨부하오니, 지자체, 지역단위 농·축협, 농민단체 및 자조금단체 등 각 기관에서는 농업경영체에서 임금 교부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배너안을 송부하니 기관별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설명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링크**: <https://bit.ly/3FHuTS3>
5.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명세서 작성안내 동영상’ 및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가. 링크 주소

- 1) 동영상(블로그)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3786812
- 2) 임금명세서 만들기 : <https://moel.go.kr/wageCalMain.do>

- 붙임:**
1.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 협조요청 1부
 2. 고용노동부-임금명세서 리플릿 각 1부
 3. 임금명세서 배너 각 1부
 4.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한국마사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 한식진흥원이사장, 재단법인축산환경관리원장,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주무관 **임용호** 사무관 **김윤희** 농업정책과장 **최봉순** 전결 2021. 11. 24.

협조자

시행 농업정책과-4048 (2021. 11. 24.)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1722 팩스번호 044-868-0650 / limlimlim@korea.kr / 대국민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